

정부, 세녹스에 대한 단속 지속키로

- 재경부 · 행자부 · 법무부 · 산자부 · 환경부 · 국세청 · 경찰청 등 -

-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4시 30분, 재경부 · 행자부 · 법무부 · 산자부 · 환경부 · 국세청 · 경찰청 등 8개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주재로 “세녹스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대책 회의”를 열고
 - 지난 11월 20일 서울지방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며 불법연료”라는 의견을 모으고, 석유사업법 개정이 완료되는 때까지는 국내석유유통시장의 혼란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세녹스와 다른 유사휘발유를 단속”해 나가기로 함.
- 우선 산자부는 경찰과 협조 하에 세녹스 원료인 용제의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함.
 - 즉,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 공장에 단속인력을 상주시켜 용제가 공급될 경우 전량 압수하고, 전국 13개 용제제조공장 · 탱크터미널 · 운반차량을 점검하여, 용제가 정상적 공급 경로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이를 위해 산자부는 경찰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도록 필요시 “제2차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키로 함.
- 아울러, 법무부 · 행자부 · 국세청 · 경찰청 등도 세녹스의 제조판매 근절과 체납세금 강제징수 등을 추진하기로 함.
 - 국세청은 6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

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1심 판결이후 생산 분에 대해서는 생산즉시 제품을 압류 · 봉인 · 공매처분 하는 등 징세확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 경찰청은 산자부의 용제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국세청의 체납세액의 강제징수를 위한 세녹스의 압류 · 봉인 등에 경찰인력을 지원하도록 함. 또한 경찰 자체로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 판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함.
- 법무부는 경찰이 이미 제기한 항소심에서 세녹스측의 불법 증거자료 확보 · 제출을 비롯한 사법절차 조력 등 필요한 조치를 산자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함.
- 행정자치부는 세녹스 가두판매 등에 대한 소방법상 단속을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세녹스 전문판매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요청을 수용하여 소방법상의 허가취소를 검토하기로 함.
- 환경부는 첨가제 판매기준(1%, 0.55리터)을 위반해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키로 함.
-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가장 빠른시일내에 입법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근절할 방침임. ☺